서울대학교 간행물 발간등록 지침(안)

2009. 4. 13.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간행물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간행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행물의 정의) 간행물은 각 처리과가 그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발간책자, CD, 전자파일 형태의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제3조 (간행물의 종류) 연감백서류, 통계류, 업무편람, 법규집, 사업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 교육자료, 회의자료, 목록류, 연혁집, 연설강연지, 전시도감화보집 등이 있다.

제4조 (간행물의 발간등록 절차)

- ① 간행물 원고가 완성되면 기록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② 부여된 발간등록번호를 간행물에 첨부하여 인쇄해야 한다.
- ③ 재무관 및 지출관은 간행물발간 관련경비 지출 전에 간행물의 발간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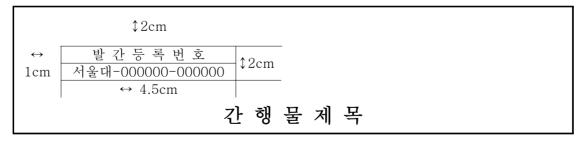
제5조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 구성 및 표기)

① 발가등록번호는 학교명, 수신처기호, 등록일련번호로 구성한다.

【구성 예시】

발 간 등 록 번 호				
서울대	_	000000	_	000000
학교명		수신처기호		등록일련번호

② 발간등록번호는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등록 번호"라고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한다.



제6조 (발간 간행물의 송부) 처리과의 장은 발간 등록된 간행물을 발간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기록관에 3부를 송부해야 한다.